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87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외부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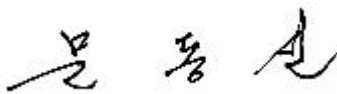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88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른” 으로 하고 “규정함을” 을 “규정하는 것을” 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의” 를 “결산감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로 하고, “3인 이상 5인 이내” 를 “5명” 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를 “시의회(이하 의회 “라한다)가 추천·선임하되” 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 를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때에는” 을 “경우” 로,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른 ----- 규정하는 것을 -----.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의회가 선임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추천·선임하되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략)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협조) ----- 경우 ----- 없으면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에 따른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에 따른 -----.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 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에 따른 ----- 에 따른 -----. ② ----- 에 따른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100,000원으로 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 ----- 해당 -----.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89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생 략)</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p> <p><신 설></p> <p>5. 6. (생 략)</p> <p>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별표 1】<개정 2008.07.15, 2013.01.0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철도운임</th> <th>선박운임</th> <th>항공운임</th> <th>자동차(버스)운임</th> <th>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1등급</td> <td>1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td> </tr> <tr> <td>제2호</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40,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p> <p>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다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3.01.02.></p> <p>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p> <p>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p> <p>4. -----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p> <p>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무지 출장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p> <p>5. 6. (현행과 같음)</p> <p>7.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p> <p>8. ----- 해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p> <p>【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숙박비(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실비(특실)</td> <td>실비(1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r> <tr> <td>제2호</td> <td>실비(일반실)</td> <td>실비(2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0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인*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 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

문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회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사용
 3.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 ③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지역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
- ④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제11조(행·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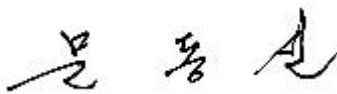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1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신 설>	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2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신 설>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3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2”를 “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2조제6호 가목 “국민연금법 제2조”를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3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3항(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5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등 지원)을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본문 중 “20조”를 “제2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2.(생략)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생략)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가입자 제외) 7.~8. (생략)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17.(생략)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 건당"을 말한다. 19.~22.(생략)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4.~28.(생략)</p>	<p>제2조(정의) 1.~2.(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항 제7호----- 4. (현행과 같음) 5. ----- 제16조제1항 6.----- ----- ----- -----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1호및제12호-----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7.~8. (현행과 같음)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10.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1. ~ 17. (현행과 같음) 18. <삭제> 19. ~ 22. (현행과 같음) 23.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4. ~ 28.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② (생략) <신 설></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의 조속기한) 기금의 조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조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조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중설 기업 등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신·중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p>	<p>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20조----- ----- -----</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4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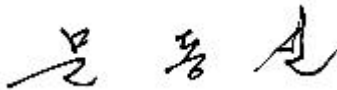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고 등) ① (생 략)	제18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5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생활보호대상자 제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로 하며 제5조에 “단,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신설규정은 공포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우 가정 및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제외)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 -----.</p>
<p>제5조(기금 지급대상 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불우 가정 및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제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 지급대상 등) 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단,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p>	<p>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6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2항 1호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를
출산장려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
1호의 2서식) 1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신청) ①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1.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p>	<p>제6조(지원신청)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p> <p>② (현행과 같음)</p> <p>1. 출산장려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p>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신청서(제6조관련)

보호자	부		생년월일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모		생년월일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신생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산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input type="checkbox"/> 넷째아 <input type="checkbox"/> 다섯째아 이상(번째아)				
	출생의료 기관			출생일자	년 월 일	
	전라북도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p>군산시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소 :</p> <p>신생아와의 관계 :</p> <p>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위와 같이 군산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장려 담당자(직급) (성명) 서명 읍면동장 (직인)</p>						
<p>군 산 시 장 귀 하</p>						
<p>첨부서류 : 부모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p>						

[별지 제1호의 2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1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예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출산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신청인과 출산자가 동일한 경우 미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출생자 포함해서 기재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input type="checkbox"/>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이상(이름 :)
	<input type="checkbox"/>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250천원. 1회)	구입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첨부 <input type="checkbox"/> 미첨부 ※ 미첨부시 추후제출

일 반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센터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센터 :)

급부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복지담당확인
출생사실 및 가족관계사항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 확인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부모의 거주기간	부 ()년 ()월	<input type="checkbox"/> 소속 및 직급 :
	모 ()년 ()월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일자 : 20 . . .) ※ 거주기간 1년이상일 경우 소급신청가능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 째	<input type="checkbox"/>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소속 및 직급 : <input type="checkbox"/>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육아용품 구입비 영수증(넷째아 이상 육아용품지원비)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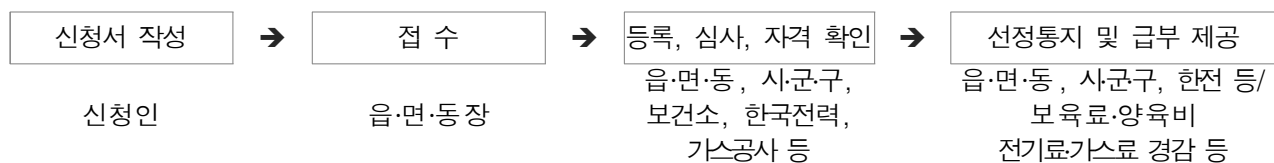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 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7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42조 별표 15의 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8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 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너비 25미터이 상 도로에 연결한 경우에 한한다)</u></p>	<p>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99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활동"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제4조의 사항에 해당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 제9의2호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
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
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
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비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7. 법 제66조의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1년이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3. 회원은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4.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단체

제5조(지원결정 심의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결정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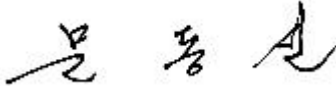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00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3조에 따른 "시도"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군산시 도로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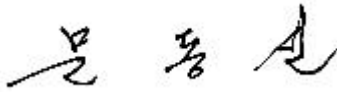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01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 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u>허가시</u>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u>공사개시전</u>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02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03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법 및 영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 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변경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 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4조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사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제2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범위는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이 높이로 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제17조에 의한다.

제22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39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2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참고 용도의 건축물

3. 학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제2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로 및 지하 계단실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철골 형태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감리자와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른다.

2. 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에 대한 관련자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건축조례를 따른다.

제3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허가변경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⑤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지도원)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5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6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5 장 대지 안의 조경 등

제37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및 창고
4.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시내버스공영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0.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고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지주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3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명서류

제4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 6 장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제4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4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치 등 가로변 미관 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 7 장 공개 공지 등

제4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용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되 지나친 소음 등으로 공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법8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4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3월 24일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양성화를 위한 건축주의 청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 ⑦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8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9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건축문화상 응모대상은 군산시 소재 건축물에 한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녹색건축물 조성 건축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9%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3%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은 12%(기준 15%이하)로 한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완화비율을 합한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0,000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별표 3]

가설건축물

대상 건축물	구 조	면 적	비 고
1. 관리사무소 (주차장,체육시설)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2. 화원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옥상 설치 불가
3. 제품 야적장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4. 기계 보호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5. 차양시설·바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지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 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공장부지 안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함.
7.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5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5.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6. 위 대가기준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별표 5]

대지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한옥	.1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 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4) 한옥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비고

-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군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군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한다.
2. 건축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만약, 2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문화상 응모 신청서

연 번					
건축위치					
건축주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률		기타용도
	건축종별				
	최고높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동 세대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시공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주단면도)
 2. 완공사진 1점
 3. 투시도 1점
 4. 설계설명서
 5. 예술장식품(설치한 경우)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군 산 시 장 귀하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04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4호의 규정은 용자 실행 시 용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
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용자금의 상환) ①·② (생 략)</p> <p>③시장은 용자금을 대부분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④ (생 략)</p> <p><신 설></p> <p>제16조 (생 략)</p>	<p>제9조(용자금의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1~4호의 규정은 용자 실행 시 용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 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p> <p>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24호

전라북도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징수관 : 경제항만국장
- 2. 분임징수관 : 환경정책과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경제항만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25호

전라북도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15일

군산시장 *본 동 선*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2223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조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조정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

- 평상시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나.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01월 09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수도과
- 2) 전 화 : 063-454-5362
- 3) 팩 스 : 063-452-81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 : 063-454-5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과장 및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5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과장 및 수도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군산시 공고 제2016-2233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상수도급수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조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조정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

- 평상시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나.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01월 09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 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수도과
- 2) 전 화 : 063-454-5362
- 3) 팩 스 : 063-452-81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 : 063-454-5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조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 조정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

- 평상시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나.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80조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수당지급 (2017년부터 반영 예정)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2) 규제심사 : 심사완료
- (3) 입법예고 : 2016. 12. 15 .~ 2017 . 01. 05(21일)
- (4) 비용추계서 : 별 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의3(위원회의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8조의2(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p> <p>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 설></p>	<p>제38조의3(위원회의 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p>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p>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별지 제19호서식>(개정201 . . .)

위 촉 장

위 원 ○ ○ ○

생년월일 0000. 00. 00.

군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귀하를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수도사업소장 (직인)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6. .)

심 의 번 호	제 호
심의년월일	년 월 일
상 수 도 요 금 조 정 심 의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 민원인

- 주 소 :
- 성 명 :
- 가 구 수 :
- **고객번호 :**

2. 민원접수일 : 년 월 일

3. 상수도요금 부과내용

4. 민원내용

5. 민원사항 조사내용

6. 기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심 의 결 정 서

심의번호 : 제 호

수 용 가

주 소		성 명	
관리번호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m ³
격중납기	납기	격중사용량	m ³
		관리검침결과 월사용량	m ³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년 월 일

군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 고시 제 2016 - 150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내초지구 및 어은지구)에 대한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12월 9일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내초지구

■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A1 ~ A12 (기정) A1 ~ A16 (변경)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이내에서 1층에 한함)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차목의 장의사, 더목, 러목 제외)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이내에서 1층에 한함)
			불허용도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공공시설용지(공동작업장)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작1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에 해당하는 시설(제조업소)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불허용도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공공시설용지(마을회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마1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마을회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불허용도 (변경없음)	• 허용용도 외의 용도

2. 어은지구

■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A	A1 ~ A59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이내에서 1층에 한함)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차목의 장의사, 더목, 러목 제외)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이내에서 1층에 한함)
			불허용도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 공공시설용지(공동작업장)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	B1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에 해당하는 시설(제조업소)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불허용도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공공시설용지(마을회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	B2	용도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허용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불허용도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기타사항(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단, 허용용도에 관하여는 공공시설용지 변경사항 적용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6-15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51호선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외 3개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외 3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m ²)	
소로1-251	10	190	군산고210 (‘96.6.1.)	10	110.2	1,189	신설
소로2-575	8	108	군산고210 (‘96.6.1.)	8	107.6	921	신설
중로1-17	20	380	군산고210 (‘96.6.1.)	10	190.1	1,665	도로확장 (10m→20m)
대로2-11	30	990	전북고111 (‘95.6.29.)	15	17.2	330	접속부
계					425.1	4,10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1-17호선 >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148-2	답	1,503	30	고영선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파트 104-503	전북자연농업협동조합	전북 남원시 의총로 28(금동)	근저당
2	“	148-6	답	99	99	군산시				
3	“	143-1	답	658	658	군산시				
4	“	139-4	답	6	6	군산시				
5	“	138-3	답	430	430	군산시				
6	“	137-1	답	6,758	442	고종규	군산시 부곡1길5(나운동)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전북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근저당
						김영국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전북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근저당
						장정선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토지의 전부)
						양경희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박미자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이상언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 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김종기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유호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종성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이승진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 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고치영	군산시 개정동 585-20			
계	6필지	9,454	1,665						

< 대로2-11호선 >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137-1	답	6,758	330	고종규	군산시 부곡1길5(나운동)	항토현농업협동조합	전북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근저당
						김영국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항토현농업협동조합	전북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근저당
						장정선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토지의 전부)
						양경희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박미자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산아파트 106동 1501호			
						이상언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 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김종기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유호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종성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이승진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 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고치영	군산시 개정동 585-20									

< 소로1-251호선 >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151-7	답	3,063	186	김민성	전북 순창군 북흥면 동서길 24-24			
						황재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108동304호 (효자동3가, 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			
						전영만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36,103동 502호 (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			
						김종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805호			
						김병준	전북 군산시 미룡로 42, 314동 303호			
						김영래	전북 군산시 상운로 19, 102동 105호(나운동, 한산주택)			
						김종희	전북 군산시 구영4길 38(영화동)			
						고금순	전북 군산시 나운로 39, 204동 1009호(나운동, 나운2차현대아파트)			
						정광식	전북 군산시 미룡로 41, 201동 1103호			
						김정례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104동 1308호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99-2	근저당권 지상권
						고유미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104동 1308호(지곡동, 도현해나지오아파트)			
						강신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1102호(산청동, 리버힐삼성아파트)			
2	"	151-6	답	93	93	김무상	나운동 155-6 롯데아파트 301동 1403호			
3	"	134	답	909	530	추미정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34, 102동 304호 (서신동, 비사별아파트)			
						허현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45, 102동 303호(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박경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6길 9, 101동 1501호			

						(송천동1가, 케이제이라미안아파트)			
4	“	132-25	답	264	13	안승순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646 106동 204호(효동, 현대아파트) 이종영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4길 86 (복수동) 천기덕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127번길 44-9, 201호(갈마동)			
5	“	132-26	답	165	45	장정숙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382-1			
6	“	132-27	답	165	48	김민지 대전광역시유성구왕가봉로2번길76 401호 (노은동)	대전광역시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58-8	근저당 지상권
7	“	132-28	답	165	48	허명숙 대전광역시중구호동73-4 선전주택 7-301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지상권
8	“	132-29	답	165	49	오병기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150 116동 808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9	“	132-30	답	165	41	이정순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22-1 라이프새마을 아파트 101-707			
10	“	132-35	답	83	65	이관구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093 리베라스위트빌-808			
11	군산시 지곡동	132-36	답	165	60	김필영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2길 114 (가양동)			
						연규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1-18			
						오선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75-3 401호			
12	“	132-37	답	199	11	박영숙 익산시부송동216-6 오뚜그란데 904-1102	원광중앙 신용협동조합	전북 익산시 신동 760-10	근저당 지상권
계		12필지		5,601	1,189				

< 소로2-575호선 >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132-35	답	83	18	이관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93 리베라스위트빌-808			
2	“	132-36	답	165	58	김필영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353-1			
						연규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1-18			
						오선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75-3 401호			
3	“	134-2	답	920	195	추미정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34, 102동 304호(서신동, 비사별아파트)			
						허현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45, 102동 303호(서곡현대아파트)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근저당 지상권
						박경희	전주시 덕진구 두간6길 9, 101동 1501호(케이제이라미안아파트)			
4	“	135	답	80	80	이애란	군산시수송동로91, 108동 1202호 (수송동, 수송아이파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채성희	군산시 용둔길 12, 102동 202호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5	“	135-1	답	188	24	김경환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46번길 16 (부사동)	남대전신용 협동조합	대전시 중구 대종로 346번길 16(부사동)	근저당 지상권
6	“	135-2	답	188	29	하인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4-209	전주대건신 용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1	근저당 지상권
7	“	135-3	답	188	32	김숙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93 경남아파트 109-1306			
						여은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 3-1104			
8	“	143	답	1,164	482	강겸석	군산시 백토로 242, 301동 1103호(나운동, 롯데아파트)			
9	“	138-1	답	170	3	김기현	군산시 동지곡길 53, 109동 701호(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농협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군산중앙로지점)	근저당 지상권
계		9필지		3,146	921					

군산시고시 제2016 - 15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 12. 9.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4	주차장	군산시 경암동 635-25번지 일원	-	증)2,604.2	2,604.2	금 회	군산경찰서 공영주차장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6-157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 152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5.

군산시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5인이내, 사무국장1인, 감사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6 - 1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6-0005호 (2016. 12. 12.)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 성명 : 현대중공업(주)
- ③ 허가목적 : 건조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군산항 인근 외해 계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비응도동7번지(십이동파도) 서쪽 4마일 해상 공유수면
- ⑤ 면 적 : 19,320m²
- ⑥ 허가기간 : 2016. 12. 20. ~ 2017. 1. 10.까지

군산시 공고 제2016-2089호

군산 도시시계획시설(소로2-32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23호선)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9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355-3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23호선)사업

2) 명 칭 : 월명중학교 후문 도로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확포장 L=60m, B=4.0m→8.0m (A=2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2)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17. 12. 31.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소룡동	1355-34	대	17	17	박연출	익산시 모현동1가 641			
2	"	1355-35	대	23	23	한정후	군산시 소룡동 1355-11			
3	"	1355-36	대	27	27	오종식	전남 영광군 낙월면 각이리 48			
4	"	1355-37	대	33	33	임경배	군산시 소룡동 1355-13			
5	"	1355-38	대	38	38	군산시	-			
6	"	1355-23	답	148	148	군산시	-			
계				286	286					

3.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군산	소룡	1355-10	상가	조적조슬래브	85.13	박연출	소룡동 1355-10				
				주택	조적조슬래브	85.13						
				화장실 및 보일러실	조적조슬래브	일괄						
				대문		일괄						
				계단		일괄						
				창고	조립식판넬	20						
				바닥포장		35.5						
				담장(M)		8						
2	군산	소룡	1355-11	다용도실	조립식판넬	7.2	한정후	소룡동 1355-11				
				주택	벽돌조슬래브	96.49						
				창고	조적조슬래브	4.5						
				대문		일괄						
바닥포장		35										

				차양		일괄							
				계단 및 보일러		1식							
				창고 및 방	조적조슬래브 및 선라이트	10.8							
				담장(m)		7.5							
				등나무		1							
3	군산	소룡	1355-12	주택	벽돌조슬래브	96.83	오종식	소룡동 1355-12					
				보일러실	조적조슬래브	3							
				대문		1							
				담장(m)		23							
				바닥포장		45							
				계단	철재	1							
4	군산	소룡	1355-13	주택(1층)	조적조라브	91.77	임경배	소룡동 1355-13					
				주택(2층)	조적조 및 조립식 판넬	74.2							
				통로 및 다용도실	2층소재	5.16							
				대문	철재	1							
				계단	철재	1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3.6							
				보일러실	조립식판넬	4.68							
				바닥포장		30							
				현관	조립식판넬	11.25							
				담장(m)		7.5							
5	군산	소룡	1355-14	주택(1층)	적벽돌슬래브	67.62	군산시	-					
				주택(2층)	조적조스레트	26.28							
				창고	조적조슬래브	4.65							
				화장실	조적조슬래브	3.23							
				다용도실	목조스레트 (2층)	6							
				화장실 및 보일러실		7.2							
				계단 및 보일러실	조적조슬래브 및 선라이트	1							
				바닥포장	콘크리트	24							
				대문		1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16. 12. 09. ~ '16. 12. 23.)

5.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6.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6-209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동군산종합병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142호(2016.11.1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동군산종합병원)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나. 명 칭 : 휴게음식점 이전 및 확장공사
3. 사업 내용 : 주1동/1층 일부 용도변경
 - 가. 의료시설(병원) 24.34㎡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4.34㎡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2.51㎡ → 의료시설(병원) 12.5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
 - 나. 성 명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5. 사업기간 : 2016. 11. 18. ~ 2016. 11. 30.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군산시 공고 제2016-2115호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수정)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3호선의 1개노선)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공고 제2016-2043호(2016.12.02.)로 열람공고된 공고문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중로1-103호선 편입토지면적 수정) 재열람공고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16.12.09~'16.12.23.)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3	24	집산도로	646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변경	중로	1	103	24	집산도로	646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법면부포함 (B=0~4.75m)
기정	소로	2	989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변경	소로	2	989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	군산시고시 제2016-55호 (2016.4.29)	법면부포함 (B=0~2.55m)

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103	중로1-103	• 경미한 변경(법면부 포함) (법면폭 B=0~4.75m)	•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법면을 포함하여 결정함
소로2-989	소로2-989	• 경미한 변경(법면부 포함) (법면폭 B=0~2.55m)	•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법면을 포함하여 결정함(기개설된 도로(L=1,417m) 포함)

4.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사동 112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3호선의 1개노선)사업
- 2) 명 칭 :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 1-103호선 : B=24m, L=646m(법면폭원 : 0~4.75m), A=19,794㎡
- 2) 소로 2-989호선 : B=7~8m, L=121m(법면폭원 : 0~2.55m), A=1,270㎡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항만물류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5.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종로1-103호선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개사동	1029	답	4,952	1,990	나일환	전북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 코아루아파트109동404호			사유지
						이종구	전북 군산시 계산로 78, 102동 1402호			
						박요한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 3차아파트 208동 102호			
2	군산시 개사동	1030-1	답	2,476	1,808	이종구	전북 군산시 지곡동 4205 도현해 나시오아파트 102-1402			사유지
						박요한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 3차아파트 208-102			
3	군산시 개사동	1047	답	5,484	2,286	강태산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42 산북주 공아파트 203동 401호			사유지
4	군산시 개사동	1048	답	6,334	2,712	신명만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38-2			사유지
5	군산시 개사동	1075	답	3,296	1,718	송명재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8			사유지
6	군산시 개사동	1076	답	4,053	1,568	송명재	전북 군산시 산북동 168			사유지
7	군산시 개사동	1094	답	4,853	1,793	해담영농 조합법인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207번 길 6-7			사유지
8	군산시 개사동	1095	답	4,853	2,263	송명재	전북 군산시 개사동 1136			사유지
9	군산시 개사동	1123	잡	1,905	824	최광덕	전북 옥구군 미성읍 개사리 672-55			사유지
10	군산시 개사동	1123-1	도	1,785	105	군산시				공유지
11	군산시 개사동	1124	답	2,200	793	문형선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황길 51-5	농협 은행	서울시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사유지 (지상권)
12	군산시 개사동	1124-1	도	1,787	80	군산시				공유지
13	군산시 개사동	1204-8	구	85,988	1,497	국(농수산부)				국유지
14	군산시 개사동	1208	도	1,636	231	국(농수산부)				국유지
15	군산시 개사동	1212	도	2,780	126	국(농수산부)				국유지
합 계		15필지	-	134,382	19,794					

2. 소로2-989호선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옥서면 옥봉리	388-2	도	340	124	국(국토부)				국유지
2	옥서면 옥봉리	388-3	대	86	5	김순동	옥구군 옥서면 옥봉리 387-4			사유지
3	옥서면 옥봉리	388-4	도	149	9	국(농수산부)				국유지
4	옥서면 옥봉리	388-5	도	620	154	군산시				공유지
5	옥서면 옥봉리	389-2	도	400	312	국(국토부)				국유지
6	옥서면 옥봉리	390-2	도	76	15	군산시				공유지
7	옥서면 옥봉리	391-2	도	69	51	군산시				공유지
8	옥서면 옥봉리	392-1	대	576	176	이윤구	경상남도 양산시 평상동 568-23			사유지
9	옥서면 옥봉리	392-5	도	92	5	군산시				공유지
10	옥서면 옥봉리	392-7	답	3,354	419	이종완	전북도 군산시 나운동 886-1 유원 파트 1-109			사유지
합 계		10필지	-	5,762	1,270					

군산시 공고 제2016-215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3-50호선/제4소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0-26호(2010.03.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 3-50호선/제4소공원)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월명동 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업
 - 나. 명 칭 :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 내용
 - 가. 도로확포장(소로3-50호선) : L=73m, B=12.0m
 - 나. 제4소공원 조성 : A=658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기간 : 2010. 3. 26. ~ 2016. 10. 28.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